

2025년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

1 추진 목적 및 근거

□ 추진 목적

- 해산된 청산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고 폐교대학 발생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'청산 절차 운영비' 및 '임금체불 등 채무변제' 비용을 사학진흥기금으로 (융자)지원하고자 함

□ 추진 근거

- 「한국사학진흥재단법」 제6조(사업)제1항제3의2호
- 「한국사학진흥재단법」 제19조(기금의사용)제2항
- 「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규정」

2 2025년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

① 지원 규모 및 방법

- (지원 규모) '25년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예산 : 200백만원*
* (예산 내역) ① 청산 절차 운영비 : 100백만원
②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: 100백만원
- (지원 방법) 상시 신청.접수 및 심사 후 지원

② 지원 대상 및 내역

- (지원 대상)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(자진해산) 또는 제47조(해산 명령)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
- (지원 내역) ㉗청산 절차 운영비 및 ㉘임금체불 등 채무변제

구 분	세부 지원내역(지원 우선순위)
가. 청산 절차 운영비	① 청산 업무 수행을 위한 초기 비용* * 용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해산된 학교법인에 한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(청산 개시 후 12개월분), 사무실 집기비품 구매비용, 채권·채무 확인 수수료 용자 지원 ② 감정평가 수수료 ③ 담보(근저당권) 설정 비용 ④ 조세·공과금 ⑤ 관계자 소송비용 ⑥ 매각공고 광고비 ⑦ 청산법인 보유재산 유지·관리비 ⑧ 청산인(보조인 포함) 보수(1인 기준 월 300만원 한도내*, 최초 1개월분에 한함) ⑨ 기타 청산용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청산절차에 필요한 비용 ※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항목의 신청 금액 산정 기간은 용자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함(신청일 이전 발생 비용은 임금채불 등 채무변제액으로 산정)
나. 임금채불 등 채무변제	① 폐교대학(법인) 구성원의 최근 3개월 임금 ② 폐교대학(법인) 구성원의 임금채권 ③ 소송판결에 따른 확정채무 ④ 조세·공과금 ⑤ 청산인(보조인 포함) 미지급 보수(1인 기준 월 300만원 한도내*, 최초 1개월분에 한함) ⑥ 기타 청산용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채무변제금액

* 단, 신청법인별 월 보수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법인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(이사회)의 별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

3 용자 신청 및 지원 한도

- (용자 신청) 지원 내역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 신청 가능
- (지원 한도)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적은 금액

※ 지원 한도 산정식 = MIN(①용자 신청금액, ②당해연도 용자지원 한도액)
 : ① 용자 신청금액
 : ② 당해연도 용자지원 한도액(= 처분재산 감정평가액 평균의 50% - 선순위채권액*)

* 선순위채권액 : 해산된 학교법인의 총 채무액 중 용자 신청 내역에 미포함 된 채무액으로, 향후 용자 지원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액을 의미함

4 용자 조건

- (이자율) 고정금리*(교육부 기채 허가 시점의 공자기금 적용)
 * '24년 4/4분기 공자기금 예탁금리 - 연 3.123%
- (연체 이자율) 용자이자율* + 연 3%p
 * 교육부 기채 허가 시점의 공자기금(고정금리)

- (상환기간)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 일시상환(거치기간 10년 이내)
 - ※ 1) 재산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상환(수수료 無) 가능(단, 조기상환 시행 전 조기상환에 대해 재단과 협의하여 문서를 시행하여야 하며, 조기상환 시 발생 이자의 경우 기존 배정 용자 재원으로 사용 불가)
 - 2) 거치기간 연장 검토 가능
 - 3) '거치기간'은 이자 산출을 위해 설정된 기간으로, 해당 기간 중 실질적 이자 상환은 유예됨
- (신용 및 담보 여부) 담보 조건에 한함
 - 담보설정액(채권최고액)을 용자금의 130%로 설정하되, 용자원리금액이 용자금액의 130%를 초과할 경우는 청산용자심사위원회에서 담보 설정액(채권최고액)을 별도로 정함
 - '청산 절차 운영비'와 '임금체불 등 채무변제' 목적 용자금을 동시 신청받아, '청산 절차 운영비'를 우선 지원하는 경우 후취담보 조건*으로 용자 지원
 - * '임금체불 등 채무변제' 목적 용자금 지급 전, '청산 절차 운영비'를 포함하여 잔여재산에 담보(근저당권) 설정
 - 담보 설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보유재산 감정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운영비*에 한하여 지원 가능
 - * 보유재산 관리를 위한 필수 소요비용, 채권신고 공고비용, 감정평가비용

5 용자 심사기준

- (심사원칙) 내·외부 업무 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 용자심사위원회*에서 용자 신청서류의 검토 및 심사
 - * 총 10인 이내 구성
 - (위원장) 사무총장, (위원) 교육환경개선본부장,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·고등 직업교육정책과장, 법률·회계·금융·부동산 분야별 외부 전문가 6인
- (심사기준) ① 용자 심사지표에 따라 산출된 심사점수와 ② 용자 배제·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심사 추진
 - ① 용자 심사지표(2개 지표, 4개 항목 총 100점 만점)
 - 심사 결과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일 경우, 용자지원 가능
 - 심사 항목 및 배점

심사지표(배점)	심사 항목 및 항목별 배점			
용자 신청 적정성 (30점)	• 조속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한 용자 신청의 적정성 평가			
	① 용자 신청내용(20점) - 평가기준 : 청산법인에서 신청한 용자 내역 평가			
	구분	청산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	청산절차 운영비	임금체불 등 채무변제
	배점	20점	15점	15점
	② 용자지원의 필요성(10점) - 평가기준 : 청산절차 개시 이후 청산절차 진행 기간 평가			
용자 상환능력 (70점)	구분	5년 이상	3년 이상	3년 미만
	배점	10점	8점	6점
	• 청산 처분재산 평가액*과 용자 신청액 및 용자원리금**(10년 거치 일시 상환금액)의 비교를 통한 용자 상환능력 평가			
	① 용자 신청액 대비 청산 처분재산 평가(30점, △) - 평가기준 : 청산 처분재산 평가액 ÷ 용자 신청액			
	구분	130% 이상	100% 이상	70% 이상
	배점	30점	25점	20점
	② 청산 처분재산 평가액 대비 용자원리금 평가(40점, ▼) - 평가기준 : 용자원리금 ÷ 청산 처분재산 평가액			
	구분	70% 미만	100% 미만	130% 미만
	배점	40점	35점	30점
	배점	40점	35점	30점

* 청산 처분재산 평가액 = 2개 감정평가 평균 금액의 50% - 선순위채권액
단,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100%를 인정하고 인정된 금액의 50%를 반영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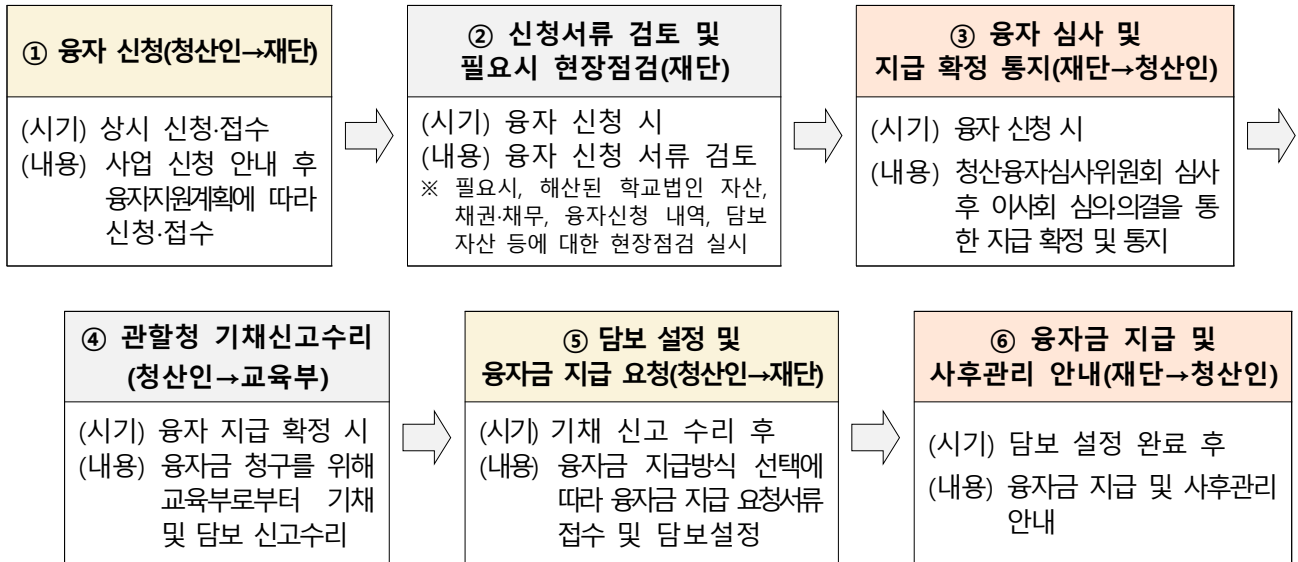
** 용자원리금(10년 거치 일시 상환금액) = 용자원금 + (용자원금 × (고정)이자율 × 용자 일수 / 365일)

② 용자 배제·제한사항

배제사항	제한사항
① 담보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* - 법인의 채무 범위가 담보 인정 가액(감정평가액 평균의 50%)을 초과할 경우 * 단, 담보 설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잔여재산 감정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운영비에 한하여 용자 지원 가능 ② 기타 청산용자심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* * ex) 청산 추진 현황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	① '청산인 보수'의 경우 1인 기준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용자심사 시까지 용자 서면 또는 현장점검 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③ 기타 청산용자심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제한할 것을 결정한 사업* * ex) 청산 추진 현황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

6 용자 지원 절차

- (지원 절차) 신청·접수 → 심사(허가·담보 설정) → 지급



- (용자금 지급방식) 직접 및 간접 지급방식 중 선택 가능
 - (직접 지급) 재단에서 용자금을 청산절차 운영비 및 임금채불 등 채무변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집행
 - (간접 지급) 재단에서 용자금을 해산된 학교법인 계좌로 지급하고 청산인이 지급 대상자에게 집행
- (용자금 사용) ‘청산 절차 운영비’ 및 ‘임금채불 등 채무변제’에 대해 당초 신청한 세부 용도와 달리 용자금을 집행하여도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목적의 경우 사용 가능
 - ※ 다만, 신청·수령한 ‘청산 절차 운영비’, ‘임금채불 등 채무변제’ 각 구분 용도 및 한도액 내로만 집행 가능하며, 최초 용도와 상이한 집행 필요시 재단에 사전 안내(공문) 후, 서면점검 시 관련 증빙 제출

7 용자 사후관리 계획

- (서면조사) 해산된 학교법인은 용자금 집행내역을 매년 3월과 10월에 재단으로 제출하고, 재단은 용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, 채무변제 완료 여부 등을 조사함
- (현장점검) 재단은 용자금 목적 외 사용 여부, 용자 관련 제출서류 원본과의 일치 여부, 청산 진행현황 및 완료 여부 등의 확인을

위하여 매년 서면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함

※ 재단은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및 청산 진행현황 파악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

- (시정조치) 해산된 학교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았거나,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을 발견된 경우 융자금 회수 또는 원상회복 조치

8] 담보 취득 및 평가 기준

- (담보취득기준)

- (담보 설정 비율) 융자 원금의 130%*

* 융자원리금액(10년 만기 일시상환액)이 융자원금의 130%를 초과할 경우는 청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담보설정액(채권최고액)을 별도로 정함

- (담보 설정 시점) 담보는 선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'청산 절차 운영비'와 '임금체불 등 채무변제' 목적 융자금을 동시 신청받아, '청산 절차 운영비'를 우선 지원하는 경우 후취담보 조건*으로 융자 지원 가능

* '임금체불 등 채무변제' 목적 융자금 지급 전, '청산 절차 운영비'를 포함하여 잔여재산에 담보(근저당권) 설정

※ 담보설정기간 : 교육부 기채허가일로부터 융자금 상환 후 해지 완료 시까지 설정

- (담보 취득 가능 물건) 청산법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*

*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규정 제30조(담보물 취득 및 관리) 및 교육부 사립대학(법인) 기본재산 관리안내서를 준용하되, 청산 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담보 설정 시점 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- (담보물건 평가 방법)

유효담보가액 = 담보인정가액 - 선순위채권액(융자 변제 대상 외 채무액)

- (유효담보가액) 유효담보가액이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는 경우, 담보 설정 가능

- (담보인정가액*) 감정평가 두 곳 평균 금액의 50% 반영

*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100% 반영 가능함

- (감정평가 인정 기준) 용자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작성된 감정평가서 인정*

* 2년 이내의 감정평가서가 부재한 경우, 가장 최근에 작성된 감정평가서 기준 청산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'청산 절차 운영비'를 우선 용자 지원하고, 향후 재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용자 가능액을 확정하여 잔여 용자액을 지급함

9 기타 사항

- (채무변제 용자지원 요건) 용자지원을 위해 최신 자산 감정평가를 우선 필요로 하는 해산된 학교법인의 경우,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청산절차 운영비를 먼저 용자 지원한 후 임금채불 등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지원함

